

시 민

문서번호	재정균형발전담당관-6207
결재일자	2020.5.22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방침번호	

주무관	재정총괄팀장	재정균형발전담당관	재정기획관	기획조정실장
나정파	정명이	정영준	이상훈	05/22 조인동
협 조	안전총괄과장 김기현			

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

2020. 5.

기 획 조 정 실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p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p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</p> <p>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<p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p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</p> <p>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p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<p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<p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</p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p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

수해 등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및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

I 개 요

발행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의2

필 요 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대응 등을 위해 기금 조기 집행

***	*****	**	**	*****
*****	*****	*****	*****	*****
*****	*****	*****	*****	*****
*****	*****	*****	*****	*****

- 향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예방 등에 대한 적기대응을 위해 2020년 법정적립금(1,359억원) 규모의 예치금 확보 필요

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확보 요청(행정안전부, '20.5.19)

II 발행계획

발행대상 : 재난관리기금 자원 조성

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〉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

사용용도

- 풍수해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적립
-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

III 추진절차

-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: '20. 5월
-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: '20. 5월
- 시의회 동의안 부의 및 의결 : '20. 5월~6월
- 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 개정 : '20. 5월~6월
- 조성 재원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채 추가
-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심의 : '20. 7월
- 지방채 발행 및 세입조치 등 : '20. 7월 ~